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24.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12월 9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12. 1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 1. 제안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채정 협의(3급, 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증원과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직 증원 및 기능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94명 ⇒ 2,792명 (감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9명 ⇒ 1,437명 (감 2명)
  - 감 2명 : 일반직 +5명, 기능직 △7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기능직 공무원

구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260명	<신설>	5%이내	13%이내	19%이내	32%이내	31%이내
조정	253명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내
증감	△7명	+1%	+1%	+3%	변동없음	변동없음	△5%

○ 별정직 공무원

구분	총정원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행	21명	5%이내	20%이내	48%이내	15%이내	10%이내	2%이내
조정	21명	5%이내	24%이내	44%이내	15%이내	10%이내	2%이내
증감	변동없음	변동없음	+4%	△4%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 ③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1,065명 ⇒ 1,070명 (증5명)

- 3급 증 1명( 8명⇒ 9명) ※ 본청3급 +1 (7명⇒8명)

- 5급이하 증 4명(994명⇒998명)

○ 별정직 : 총정원변동없음⇨5급+1명(4명⇒5명),6급 △1명(10명⇒9명)

○ 기능직 : 260명⇒253명(△7명)

○ 연구직 : 총정원변동없음⇨연구관+1명(21⇒22명),연구사△1명(117명⇒116명)

※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 가.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한시직급 3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관리청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보강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직 증원, 기능직 공무원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개정조례안 개정내용 검토결과

#### □ 정원 총수 2명 감소는

- 정원 총수 2,794명에서 2,792명으로 집행기관만 총2명을 감소한 것으로
  - 일반직 공무원 +5명,
  - 기능직 공무원 △7명

#### 《총정원 변동내역》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	기능직
개정후	2,792	1	1,070	21	138	24	1,243	42	253
개정전	2,794	1	1,065	21	138	24	1,243	42	260
증감	△2	-	5	-	-	-	-	-	△7

#### 《기능직공무원 정원변동내역》

구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기준	253명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내
개정후 예상인원	253명	2명	15명	41명	48명	81명	66명
개정전	260명	0	13명	33명	49명	83명	82명
증감	△7명	2	2	8	△1	△2	△16

※ 비율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예상인원으로, 개정후 예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서별·직급별 증가내용은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명(한시직급 3급 +1명, 일반직+1명)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한시직급과 기능직 대체인원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2명(일반직 2명)
  - 국토관리청 업무이관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설치
- 경제통상국 1명(국제관계자문 대사 1명)
  - 도정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관계자문대사 신설

## □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상향 조정내용은

### ○ 전문직종 우대를 위한 별정직, 연구직 직급 상향

- 연구관 +1명(연구사 △1명) : 명품 쌀 생산기반 확충
- 별정5급상당 +1명(6급상당 △1명) : 도정홍보역량 강화

## 다. 종합의견

금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한시직급 설치, 국토관리청 업무이관, 전문직종 우대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양양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총수의 증가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이 감소한 2,792명이며, 증감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5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공무원 7명이 감소한 것임.

정원총수 2명 감소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009년도 인건비 예산액 1,726억원 보다 2억 2,213만원이 증가한 1,729억원 정도 이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된 총액인건비 1,772억원의 범위내에서 있음.

이는 충청북도의 당면한 정책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에 대한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과 지방으로 이관되는 국토관리청 이관 업무를 수행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직 충원과 기능직·별정직·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비율 상향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조치로 판단됨.

다만, 이번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5명이 증원되는 반면 기능직 7명은 감원됨에 '09년도에는 일반직은 19명 증원, 기능직은 10명 감원<sup>2)</sup>되어 직종별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근무여건개선 등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양상으로 추진하는 직급 비율 상향에 따른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인 방침이 마련되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 요지 : “생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09. 9. 1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반직 +14명, 기능직 △3명)  
09. 12.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반직 +5명, 기능직 △7명)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94명”을 “2,7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9명”을 “1,437명”으로 한다.

별표2 중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4%이내	44%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중 3급 1명(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b>2,792</b>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b>1,070</b>	-			
2~3급	1		1		
3급	<b>9</b>	<b>8</b>		1	
3~4급	1	1			
4급	61	44	7	4	6
5급이하소계	<b>998</b>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20			
연 구 직 계	138	-			
연 구 관	<b>22</b>			<b>19</b>	3
연 구 사	<b>116</b>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243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233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 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b>253</b>	-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9명</u></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2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7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⑤(생략)